

심사보고서

의안 번호	251
----------	-----

2023. 10. 13.
행정재경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3. 9. 27. 강남구청장(지역경제과)
- 나. 상정의결
 - 제314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(2023. 10. 13.)
“수정가결”

2. 제안설명 요지(기획경제국장 : 정찬식)

- 가. 제안이유
 - 모호한 기업인 지원대상 및 지원배제 사유 등을 명확히 하고 위원회 운영사항 정비 등 현행 조례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
- 나. 주요내용
 - 예우할 수 있는 기업인의 구체적인 요건 마련 및 지원배제 사유 신설 (안 제15조, 제15조의2)
 - 위원회 위원의 자격기준, 임명 또는 위촉 요건 명확하게 개정 (안 제16조)
 - 「서울특별시 강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와 중복되는 조문 삭제(안 제16조5항, 안 제18조)
- 다. 참고사항
 - 관계법령 : 해당사항 없음

-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- 기 타
 -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 - 입법예고(2023. 8. 25. ~ 9. 14.) 결과 의견있음(별첨)
 - 규제심사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
 - 부패영향평가 : 특기사항 없음
 - 성별영향분석평가 : 개선의견 없음

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: 조성수)

- 본 조례안은 기업인에게 혜택을 주거나 시상 대상에서 배제 하는 조문의 구체화 그리고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문의 간결화를 일부개정 목적으로 하고 있음.
 - 이는 지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적극 수용한 것임.
- 안 제15조(기업인에 대한 예우)는 수익을 주는 성격의 조문일 경우, 그 대상을 구체화하도록 한 국민권익위의 권고를 수용하여 각호를 4개 호로 세분화함.

1. 정부에서 무역의 날 및 상공의 날 등에 수여하는 장관상 이상을 받은 우수기업인
2. 강남구·서울특별시 또는 정부 지정 우수기업인
3. 「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 인증을 받은 우수기업인
4. 그 밖에 일자리 창출, 대규모 투자, 사회봉사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사회 공헌으로 구정에 이바지한 공을 인정받은 우수기업인

- 그러나 여기서 “필요한 예우”가 무엇인지에 관해 이해하거나 추정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,
- 안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우수 기업인을 선발하여 시상할 수 있다고 하여 “시상”이 “필요한 예우”에 해당함을 알 수 있음.
- 다만, 다른 혜택은 없는지 또, 안 제1항제1호에서는 장관상 이상을 받은 우수 기업인에게 구청장이 추가로 시상하는 것인지 등에 대해 해당부서의 설명이 필요할 것임.

서울특별시 강남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

수 정 안

관련의안번호

제251호

제안일자 : 2023.10.13.

제안자 : 행정재경위원장

- 긍정적인 면으로, 제4호를 보면, 국민권익위의 권고를 적극 수용하여 “그 밖에 일자리 창출, 대규모 투자, 사회봉사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사회 공헌으로 구정에 이바지한 공을 인정받은 우수기업인” 으로 구체화하여 “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” 이라는 기존의 입법기술 행태를 개선하였음.
- 안 제6항은 “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강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다는 내용을 반영하여 조례안의 간결화를 이룬 것이며, 현행 제18조(수당 및 여비지급) 규정 역시 “강남구 위원회 조례” 제14조에 규정되어 있어 삭제한 것임.
-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의 권고사항을 적극 반영하였으나, 기업인에 대한 예우 사항이 “시상” 정도에 머물고 있어 향후 우수기업인의 자긍심을 고취시킬 방안 등을 논의할 가치는 있을 것임.
- 현재 본 조례 제14조(1)는 기업에 필요한 예산지원 규정을 반영하고 있는데, 향후 우수기업인 소속 기업에 대해 심사를 통해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임.

4. 질의 및 답변 요지 : “생략”

5. 토론 요지 : “생략”

6. 심사결과 : “수정가결”

7. 소수의견의 요지 : “없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음”

붙임 1. 서울특별시 강남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2. 서울특별시 강남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. 끝.

1) 제14조(예산 지원) 구청장은 기업지원 및 육성 활동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은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.<개정 2009.12.18>

1. 신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창업동아리, 창업보육센터 등의 사업비
2. 기업의 경영전략, 기술 및 생산성 향상에 필요한 경비
3. 기업의 국·내외 시장 판로개척에 소요되는 경비
4. 산·학·연 기술개발사업 참가기업의 사업비
5. 인력양성시책에 참여하는 기업 및 교육기관에 필요한 비용 <개정 2009.12.18>
6.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기업관련단체의 사업비 <개정 2009.12.18>
7. 기업지원 무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상용정보 비용 <신설 2009.05.01>
8. 그 밖에 구청장이 기업지원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<개정 2009.12.18>

1. 수정이유

- 본 조례안의 목적인 기업지원 및 육성을 위한 예우 대상 우수기업인을 명확히 하고,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

2. 수정주요내용

- 예우 대상인 우수기업인의 명확화(안 제15조제1항)
- 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항 정비(안 제16조제3항)

서울특별시 강남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강남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15조제1항제1호 중 “및” 을 “또는” 으로 한다.

제1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, 부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 호선으로
정하며, 업무담당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. 위원은 다음 각 호의
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<p>제15조(기업인에 대한 예우) ① 구청장은 <u>활발하고 건전한 기업활동으로 지역발전을 주도하거나 선행을 행한 기업인에게 필요한 예우</u>를 할 수 있다.</p> <p><신 설></p> <p><신 설></p> <p><신 설></p> <p><신 설></p>	<p>제15조(기업인에 대한 예우) ① ----- <u>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나 기업인(이하 “우수기업인”이라 한다)에게는</u> -----.</p> <p>1. 정부에서 무역의 날 및 상공의 날 등에 수여하는 장관상 이상을 받은 우수기업인</p> <p>2. 강남구·서울특별시 <u>또는 정부 지정 우수기업인</u></p> <p>3. 「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 인증을 받은 우수기업인</p> <p>4. 그 밖에 일자리 창출, 대규모 투자, 사회봉사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사회</p>	<p>제15조(기업인에 대한 예우) ① <개정안과 같음></p> <p>1. 정부에서 무역의 날 또는 상공의 날 등에 수여하는 장관상 이상을 받은 우수기업인</p> <p>2. ~ 4. <개정안과 같음></p>

서울특별시 강남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강남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5조제1항 중 “활발하고 건전한 기업활동으로 지역발전을 주도하거나 선행을 행한 기업인에게”를 “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나 기업인(이하 “우수기업인”이라 한다)에게는”으로 하고,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 등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기업과 기업인”을 “제1항에 따른 우수기업인”으로 한다.

1. 정부에서 무역의 날 또는 상공의 날 등에 수여하는 장관상 이상을 받은 우수기업인
2. 강남구·서울특별시 또는 정부 지정 우수기업인
3. 「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우수기업인
4. 그 밖에 일자리 창출, 대규모 투자, 사회봉사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사회 공헌으로 구정에 이바지한 공을 인정받은 우수기업인

제2장에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5조의2(적용배제) 구청장은 우수기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우를 중단한다.

1. 산업재해 및 직업병 다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

<개정안과 같음>

⑥ <개정안과 같음>

⑤ (현행 제6항과 같음)
<개정안과 같음>

한다.

<삭 제>

⑥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강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를 따른다.

⑤ (현행 제6항과 같음)
<삭 제>

⑤ 구청장은 위원이 사망,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.

<신 설>

⑥ (생 략)

제18조(수당 및 여비지급) 위원회의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2. 3개월 이상 휴업 · 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불량거래처로 규제된 경우

3. 업종 변경 등으로 우수기업인 지정 당시의 업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

제1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, 부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 호선으로 정하며, 업무담당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.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.

1. 정부 및 서울특별시의 출연기관 임직원
2. 기업인 또는 기업 관련 단체 구성원
3. 기업 관련 대학 교수 등 전문가
4. 강남구의회 의원
5. 그 밖에 기업 관련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
제16조제4항 중 “연임”을 “한 차례만 연임”으로 하고,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.

제16조제5항을 삭제하고, 같은 조 제6항을 제5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⑥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강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를 따른다.

제18조를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현 행	개 정 안
<p>제15조(기업인에 대한 예우) ① 구청장은 <u>활발하고 건전한 기업활동으로 지역발전을 주도하거나 선행을 행한 기업인에게</u> 필요한 예우를 할 수 있다.</p> <p><신 설></p> <p><신 설></p> <p><신 설></p> <p><신 설></p> <p>② 구청장은 <u>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 등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기업과 기업인</u>을 선발하여 시상할 수 있다.</p> <p><신 설></p>	<p>제15조(기업인에 대한 예우) ① ----- --- <u>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나 기업인(이하 “우수기업인”이라 한다)에게는</u> ----- -----.</p> <p>1. <u>정부에서 무역의 날 또는 상공의 날 등에 수여하는 장관상 이상을 받은 우수기업인</u></p> <p>2. <u>강남구·서울특별시 또는 정부 지정 우수기업인</u></p> <p>3. 「<u>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</u>」 제15조에 따른 <u>가족친화 인증을 받은 우수기업인</u></p> <p>4. <u>그 밖에 일자리 창출, 대규모 투자, 사회봉사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사회 공헌으로 구정에 이바지한 공을 인정받은 우수기업인</u></p> <p>② ----- <u>제1항에 따른 우수기업인</u>----- -----.</p> <p>제15조의2(적용배제) 구청장은 <u>우수기업인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우를 중단한다.</u></p>

제16조(기업지원 및 유치위원회의 설치) ①·② (생략)
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, 업무담당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, 위원은 강남구의회 의원과 그 밖의 기업관련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.

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 <단서 신설>

1. 산업재해 및 직업병 다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
2. 3개월 이상 휴업·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불량거래처로 규제된 경우
3. 업종 변경 등으로 우수기업인 지정 당시의 업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

제16조(기업지원 및 유치위원회의 설치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, 부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 호선으로 정하며, 업무담당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.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.

1. 정부 및 서울특별시의 출연기관 임직원
2. 기업인 또는 기업 관련 단체 구성원
3. 기업 관련 대학 교수 등 전문가
4. 강남구의회 의원
5. 그 밖에 기업 관련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
④ -----
 한 차례만 연임-----

⑤ 구청장은 위원이 사망,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.

<신설>

⑥ (생략)

제18조(수당 및 여비지급) 위원회의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----- 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.

<삭제>

⑥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강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를 따른다.

⑤ (현행 제6항과 같음)

<삭제>

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□ 조 례 명 : 「서울특별시 강남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」 일부 개정안

○ 성 명 : 강남구의회 조성수 전문위원(행정재경위원회)

○ 주 소 :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154

○ 연락처 : 02-3423-8133

개정안 내용	의견	비고
안 제16조의 2(위원의 해축) 안 제16조의 3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 등)	「서울특별시 강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가 제정되어 있어 중복되는 조문은 삭제 필요	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기업 지원 및 유치위원회 설치에 따른 위원회 수당
국내·외 기업 및 경제단체 유치 포상금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4조제3항

3. 미첨부 사유

-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3억원 미만

4. 작성자

지역경제과 지방행정주사보 진성용(02-3423-5498)